

목 차

| |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4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
| III. 경영참고사항 | 7 |
| 1. 사업의 개요..... | 7 |
| 가. 업계의 현황 | 7 |
| 나. 회사의 현황 | 9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1 |
|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 11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 43 |
|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 44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44 |
|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44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 3월 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원
대 표 이 사 : 육현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순화동)
 (전 화)1588-3112
 (홈페이지)<http://www.s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그룹장 (성 명)박태훈
 (전 화)02)2131-836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0기 정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 유관희 (출석률: 100%) | 이상범 (출석률: 100%) | 김영걸 (출석률: 100%) | 코마츠 자키츠네오 (출석률: 83%) | 이시카와 히로시 (출석률: 67%) |
| | | | 찬 반 여부 | | | | |
| 1차 | 2016.01.27 | 제39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불참 | 찬성 |
| | | 제39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불참 | 찬성 |
| 2차 | 2016.02.18 |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3차 | 2016.03.11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해당사항 없음 (사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개별 이사보수 결정의 건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차 | 2016.04.28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5차 | 2016.07.21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해외 지정 설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6차 | 2016.10.20 |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해외 법인 설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기술지원 재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경영위원회 | 육현표 위원장 임석우 위 원 | 2016.01.05 | 여신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 | | 2016.01.13 | 지점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2016.01.28 | 3기 장기성과인센티브 3차년도 지급의 건 | 가결 |
| | | 2016.04.21 | 여신 및 신용공여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 | | 2016.10.27 | 지점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보상위원회 | 이상범 위원장 임석우 위 원 박영수 위 원 | 2016.02.18 |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 위원회 | 이상범 위원장 임석우 위 원 유관희 위 원 | 2016.02.18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 2016.04.28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이상범 위원장 임석우 위 원 김영걸 위 원 | 2016.07.21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 2016.10.20 |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

※ 위원회 구성원 현황은 2016년말 현재 기준입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2) | 10,000 | 163 | 82 | 사임이사 보수 포함 |

※ ()는 기타비상무이사 수입이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보안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3.01~2016.12.31 | 783 | 5.7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693 | 5.1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345 | 2.5 |
| 퇴직연금 불입 |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295 | 2.2 |
| 보안 용역매출 | 삼성디스플레이 (계열사) | 2016.03.01~2016.12.31 | 247 | 1.8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3.01~2016.12.31 | 234 | 1.7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4.01~2016.12.31 | 230 | 1.7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223 | 1.6 |
| 기기구매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221 | 1.6 |
| 건물관리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1.01~2016.12.31 | 204 | 1.5 |
| 보안 용역매출 | 삼성전자 (계열사) | 2016.01.01~2016.02.29 | 156 | 1.1 |

※ 상기 비율은 2015년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6년 12월말 기준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삼성전자 (계열사) | 용역매출 등 | 2016.01.01~2016.12.31 | 3,055 | 22.3 |

| | | | | |
|-----------------|--------|-----------------------|-------|-----|
|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 용역매출 등 | 2016.01.01~2016.12.31 | 1,141 | 8.3 |
|-----------------|--------|-----------------------|-------|-----|

- ※ 상기 비율은 2015년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6년 12월말 기준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국가, 기업, 개인의 유·무형 자산 및 인적자원의 안심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성이 큰 산업으로 기계경비, 보안SI로 구분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무선 통신 및 IT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경험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계경비는 주택이나 금융기관, 상점 등에 침입, 도난, 화재와 같은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이상 발생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발생 시 출동요원의 긴급대처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 통보 등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안SI는 빌딩, 공장, 학교 등 대상 시설물의 보안 문제점과 특징, 목적과 환경에 따라 출입관리, CCTV 등 각종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축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일 빌딩 내의 보안시스템 설치에서 GOP, 발전소 등 지자체나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서비스 사업은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 사업으로 시설관리 중심의 FM(Facility Management)사업, 건물 자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PM(Property Management)사업 및 에너지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M사업은 시설운영, 유지보수, 보안, 미화, 주차, 안내 등 건물 시설관리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PM사업은 건물의 예산 수립 및 관리, 임대차관리, 빌딩 운영수익 향상방안 수립, 부동산 운영 리스크 관리, 투자 자문, 기타 수입관리 등을 통해 고객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리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사업과 성과보증 기반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아직 국내는 시장 개화 단계이나 향후 관련 정책 강화 및 시장의 니즈 확대에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테러, 기업정보 유출 등 위협요인 증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안심·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물리·정보 보안의 융합화에 따른 기회요인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안서비스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내수 침체 등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년 평균 7.5%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向後 모바일, IoT, Big data 등 기술의 발전과 他 산업과의 융·복합화 추세 등으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20년까지 년 평균 8.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안제품시장은 고화질, IP카메라로의 영상장비 교체수요와 사회적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통합 관제센터 및 생체인식 도입 확대, 홈 IoT 확산에 따른 가정용 영상시장 개척 등으로 '20년까지 평균 6% 이상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응용 스펙트럼이 넓고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으로서 向後 4次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IoT 도입과 AI로 인한 무인화/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제어, 긴급 대처, 사용자 인증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국토교통통계누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총 빌딩 수는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문화사회용, 기타 용도로 총 6,986,913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건물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6층 이상 고층건물은 175,269동으로 전년에 비해 5.46%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건물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와 대형건물,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 빌딩시스템)의 등장으로 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며 내수 경기 위축 및 경쟁사의 지속적인 저가 영업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사업은 내수업종으로 건설경기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1~3년 정도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사업입니다.

(4) 경쟁요소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의 경쟁요인으로는 서비스 인력, 대처 인프라, 운영 노하우 및 관제 역량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보안전문 연구소 및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거점과 영업 및 출동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시큐리티 전문 연수원을 통해 정예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자 구축한 지능형 통합관제 센터를 수원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시 상호 백업 가능한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식률 및 오발보율에 있어 선진사 대비 우수한 지능형영상 알고리즘, 국내외 삼성 그룹사의 출입, 근태, 식수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출입관리 솔루션, G20, 핵안보정상회의에 사용된 얼굴인식솔루션, 군용 레이더 센서 기술을 세계 최초로 민간 분야에 적용한 UWB(Ultra Wide Band)센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의 경쟁요인은 우수한 인적역량과 사업수행 경험에 기반한 차별화된서비스 품질입니다. 건물관리 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인력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다변화된 시장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계 핵심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인력양성 로드맵과 교육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적 역량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조직을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원격 감시 사업장의점진적 확대와 연구·개발로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차별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당사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경비업법(1976년 제정)'이 있으며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건설산업기본법(1958년 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와 건물관리 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종합 안심솔루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아래 수익 기반의 시장 지배력 확대, 고객 중심 경영,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시스템 혁신,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내수 경기 위축 및 저성장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사업부문 | 주요제품 |
|-----------|-----------------------------------|
| 보안시스템 서비스 | 최첨단 보안시스템/서비스 제공, 통합보안, 안전상품 판매 등 |
| 건물관리 서비스 | 부동산 시설 및 수익관리, 컨설팅 등 |

(2) 시장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은 사무실, 점포 등 상업용이 주요 시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상기기 보급 확대 및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IP기반 제품 및 지능형 영상분석 S/W 등을 개발하여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대기업 계열의 업무용 대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FM (Facility Management) 서비스 위주에서 시장 개방 및 국민소득 증대, 투자시장 다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병원·연수시설·리테일 등 대상물건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국계 투자사 등 고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임대차·신축 설계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4년 1월 10일 제일모직(舊 삼성에버랜드)으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現 BE사업부)을 양수하여 사업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 조직도

| 대표이사 | | | | | | | | |
|-----------------------|-----------------------|-----------------------|---------------------------------|-----------------------|-----------------------|-----------------------|-----------------------|-----------------------|
| S E 사 업 부 | B E 사 업 부 | S P 사 업 부 | 응 합 보 안 연 구 소 | 고 객 지 원 실 | 경 영 지 원 실 | 인 재 개 발 원 | 안 전 품 질 팀 | 준 법 경 영 팀 |

※ 전사 조직도는 2016.12.31일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주식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0 기 (2016. 12. 31 현재)

제 39 기 (2015. 12. 31 현재)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4,349 | 3,555 |
| Ⅱ. 비유동자산 | 10,255 | 10,389 |
| 자산총계 | 14,604 | 13,944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2,881 | 3,283 |
| Ⅱ. 비유동부채 | 724 | 857 |
| 부채총계 | 3,605 | 4,140 |
| 자 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0,999 | 9,801 |
| Ⅰ. 자본금 | 190 | 19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929 | 1,929 |
| Ⅲ. 이익잉여금 | 10,404 | 9,209 |
| Ⅳ. 기타자본항목 | (1,524) | (1,527) |
| 비지배지분 | | 3 |
| 자본총계 | 10,999 | 9,804 |
| 부채와 자본 총계 | 14,604 | 13,944 |

(나)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1. 매출액 | 18,302 | 17,996 |
| 2. 매출원가 | 12,809 | 12,634 |
| 3. 매출총이익 | 5,493 | 5,362 |
| 4. 판매비와 관리비 | 3,436 | 3,636 |
| 5. 영업이익 | 2,057 | 1,726 |
| 6. 기타영업외수익 | 110 | 188 |
| 7. 기타영업외비용 | 323 | 333 |
| 8. 금융수익 | 19 | 7 |
| 9. 금융비용 | 1 | 26 |
|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62 | 1,562 |
| 11. 법인세비용 | 457 | 368 |
| 1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405 | 1,194 |
| 13.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360 |
| 14. 당기순이익 | 1,405 | 1,554 |
| 지배기업소유지분 | 1,405 | 1,536 |
| 계속영업이익 | 1,405 | 1,193 |
| 중단영업이익 | | 343 |
| 비지배지분 | | 18 |
| 계속영업이익 | | |
| 중단영업이익 | | 18 |

(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I. 당기순이익 | 1,405 | 1,554 |
| II. 기타포괄손익 | 201 | (8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6 | (78) |

|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6 | (3)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1) | 1 |
| Ⅲ. 당기포괄손익 | 1,606 | 1,474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606 | 1,456 |
| 2. 비지배지분 | | 18 |
| Ⅳ.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포괄손익 | | |
| 1. 계속영업 당기포괄손익 | 1,606 | 1,113 |
| 2. 중단영업 당기포괄손익 | | 343 |

(라)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 | | 비지배지분 | 총계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소계 | | |
| 2015.1.1 (전기초) | 190 | 1,929 | 8,266 | (1,525) | 8,860 | 423 | 9,283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효과 | | | (126) | | (126) | | (126) |
| 수정후 자본 | 190 | 1,929 | 8,140 | (1,525) | 8,734 | 423 | 9,157 |
| 가. 총포괄이익 | | | | | | | |
| 1. 당기순이익 | | | 1,536 | | 1,536 | 18 | 1,554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3) | (3) | | (3)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78) | | (78) | | (78)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 | 1 | | 1 |
| 나.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1. 배당 | | | (389) | | (389) | (8) | (397) |
|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처분 | | | | | | (430) | (430) |
| 2015.12.31 (전기말) | 190 | 1,929 | 9,209 | (1,527) | 9,801 | 3 | 9,804 |
| 2016.1.1 (당기초) | 190 | 1,929 | 9,209 | (1,527) | 9,801 | 3 | 9,804 |
| 가. 총포괄이익 | | | | | | | |
| 1. 당기순이익 | | | 1,405 | | 1,405 | | 1,405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6 | 6 | | 6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96 | | 196 | | 196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 | (1) | | (1) |
| 나.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1. 배당 | | | (406) | | (406) | | (406) |
|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취득 | | | | (2) | (2) | (3) | (5) |
| 2016.12.31 (당기말) | 190 | 1,929 | 10,404 | (1,524) | 10,999 | | 10,999 |

(마) 연결 현금흐름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I. 영업활동 현금흐름 | 2,732 | 3,17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452 | 3,608 |
| 2. 이자의 수취 | 14 | 16 |
| 3. 이자의 지급 | | (29) |
| 4. 배당금 수익 | 1 | 1 |
| 5. 법인세 납부액 | (735) | (417) |
|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 (2,136) | (324) |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 (410) | (2,297) |
| IV. 현금흐름의 외화환산차이 | (1) |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85 | 558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56 | 698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41 | 1,256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반영으로 제39기 연결 재무제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39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가)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과 주식회사 휴먼티에스에스 등 4개의 종속회사(이하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자 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

가.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사 명 | 소재국 | 2016.12.31 | | 2015.12.31 | | 결산월 | 업 종 |
|------------------|------|------------|--------|------------|--------|-----|-------------|
| | | 지배지분율 | 비지배지분율 | 지배지분율 | 비지배지분율 | | |
| (주)휴먼티에스에스 | 대한민국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 에스원씨알엠(주) | 대한민국 | 100.00% | - | 93.40% | 6.60% | 12월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중국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 SOCM LLC | 몽골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나.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 회 사 명 | 2016.12.31 | | 2015.12.31 | |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주)휴먼티에스에스 | 18,476,313,101 | 17,779,467,341 | 14,238,539,526 | 13,096,290,748 |
| 에스원씨알엠(주) | 5,800,460,551 | 1,400,203,022 | 5,507,568,641 | 1,520,045,868 |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9,092,671,428 | 6,426,722,440 | 8,255,480,910 | 5,965,264,258 |
| SOCM LLC | 195,692,539 | 43,867,219 | 219,417,476 | 178,889,370 |

| 회 사 명 | 2016년 | | | 2015년 | | |
|------------------|----------------|---------------|---------------|----------------|---------------|---------------|
| | 매출액 | 당기손익 | 당기포괄손익 | 매출액 | 당기손익 | 당기포괄손익 |
| (주)시큐아이(*1) | - | - | - | 44,603,727,337 | 3,319,096,293 | 3,319,096,293 |
| (주)휴먼티에스에스 | 98,495,732,427 | 1,170,391,368 | (445,403,018) | 85,596,047,087 | 1,032,828,536 | (744,840,922) |
| 에스원씨알엠(주) | 10,220,004,450 | 240,542,181 | 412,734,756 | 10,011,482,000 | 427,985,168 | 476,026,784 |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14,260,603,583 | 445,652,725 | 445,652,725 | 13,438,058,850 | 808,881,779 | 808,881,779 |
| SOCM LLC | 485,314,736 | 130,224,177 | 130,224,177 | 68,990,096 | (33,752,167) | (33,752,167) |

(*1) (주)시큐아이가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 발생한 손익입니다.

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

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주석 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①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 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함.

(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관리용역계약: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가능성 상계관련 공시사항이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ㄷ)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함.

(ㄹ)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함.

(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

②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 (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

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42,060,351,351원, 매도가능금융 자산 5,931,315,537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㉖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적용시 전기 정보를 비교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㉞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㉟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연결

-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 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5) 외화환산

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

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②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③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④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 | | | |
|-----------|--------|--------|----|
| 건 물 | 10~50년 | 경보기기 | 5년 |
| 구 축 물 | 5~25년 | 경보설비 | 5년 |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공구기구비품 | 5년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0) 무형자산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④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⑤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채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5)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④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18)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0)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결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회사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 집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0 기 (2016. 12. 31 현재)

제 39 기 (2015. 12. 31 현재)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4,090 | 3,342 |
| Ⅱ. 비유동자산 | 10,287 | 10,378 |
| 자산총계 | 14,377 | 13,720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2,698 | 3,135 |
| Ⅱ. 비유동부채 | 717 | 818 |
| 부채총계 | 3,415 | 3,953 |
| 자 본 | | |
| Ⅰ. 자본금 | 190 | 19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929 | 1,929 |
| Ⅲ. 이익잉여금 | 10,362 | 9,173 |
| Ⅳ. 기타자본항목 | (1,519) | (1,525) |
| 자 본 총 계 | 10,962 | 9,767 |
| 부채와 자본총계 | 14,377 | 13,720 |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1. 매출액 | 18,183 | 17,888 |
| 2. 매출원가 | 12,675 | 12,516 |
| 3. 매출총이익 | 5,508 | 5,372 |
| 4. 판매비와관리비 | 3,481 | 3,673 |
| 5. 영업이익 | 2,027 | 1,699 |
| 6. 기타영업외수익 | 107 | 1,118 |
| 7. 기타영업외비용 | 319 | 329 |

| | | |
|-----------------|-------|-------|
| 8. 금융수익 | 17 | 5 |
| 9. 금융비용 | 1 | 26 |
|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31 | 2,467 |
| 11. 법인세비용 | 446 | 585 |
| 12. 당기순이익 | 1,385 | 1,882 |

(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8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I. 당기순이익 | 1,385 | 1,882 |
| II. 기타포괄손익 | 216 | (64)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0 | (6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6 | (3) |
| III. 당기포괄손익 | 1,601 | 1,818 |

(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077 | 2,188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482 | 493 |
|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효과 | | (126)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0 | (61) |
| 4. 당기순이익 | 1,385 | 1,882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323 | 1,706 |
| 1. 임의적립금 | 900 | 1,300 |
| 2. 배당금 | | |
| 현금배당 | | |
| 주당배당금(율) | 423 | 406 |
| 제40기 : 1,250원(250%) | | |
| 제39기 : 1,200원(240%) | | |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54 | 482 |
|-----------------|-----|-----|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 2015.1.1 (전기초) | 190 | 1,929 | 7,867 | (1,522) | 8,464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효과 | | | (126) | | (126) |
| 수정후 자본 | 190 | 1,929 | 7,741 | (1,522) | 8,338 |
| 가. 총포괄이익 | | | | | |
| 1. 당기순이익 | | | 1,882 | | 1,882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3) | (3)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61) | | (61) |
| 나.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 배당 | | | (389) | | (389) |
| 2015.12.31 (전기말) | 190 | 1,929 | 9,173 | (1,525) | 9,767 |
| 2016.1.1 (당기초) | 190 | 1,929 | 9,173 | (1,525) | 9,767 |
| 가. 총포괄이익 | | | | | |
| 1. 당기순이익 | | | 1,385 | | 1,385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6 | 6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10 | | 210 |
| 나.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 배당 | | | (406) | | (406) |
| 2016.12.31 (당기말) | 190 | 1,929 | 10,362 | (1,519) | 10,962 |

(바)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제 39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675 | 3,093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386 | 3,493 |
| 2. 이자의 수취 | 13 | 3 |
| 3. 이자의 지급 | | (28) |
| 4. 배당금 수익 | 1 | 9 |
| 5. 법인세 납부액 | (725) | (384) |

| | | |
|-------------------|---------|---------|
|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 (2,120) | (237) |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 (406) | (2,289)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49 | 567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9 | 552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8 | 1,11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반영으로 제39기 재무제표가 수정되었습니다.

(사)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39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

가)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함)은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①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 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함.

(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관리용역계약: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가능성 상계관련 공시사항이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ㄷ)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ㄹ)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함.

(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②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 (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16,611,226,081원, 매도가능금융자산 5,931,315,537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계약',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㉖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적용시 전기 정보를 비교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회사는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㉗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㉞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
-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 적용 시 회사는 과거기간에 대한 재작성을 하지 않고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요구되나 세 가지 개정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5) 외화환산

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

①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②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③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④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 물 | 10~50년 | 경보기기 | 5년 |
| 구 축 물 | 5~25년 | 경보설비 | 5년 |
| 차 량 운 반 구 | 5년 | 공구기구비품 | 5년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0) 무형자산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④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⑤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13)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총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5) 종업원 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의 제공

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④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18)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회사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손상차손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참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준성 | 1963.10.21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 키다 코이치 | 1960.07.07 | 사내이사 | 직원 | 이사회 |
| 사토 사다히로 | 1960.08.09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 총 (3)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 | |

| | | | |
|---------|-----------------------|---|----|
| 박준성 | (주)에스원 경영지원실장 | · (주)에스원 BE사업부장 · 삼성웰스토리(주) 지원팀장 | 없음 |
| 키다 코이치 | (주)에스원 부사장 | · 세콤(주) 그룹국제사업본부 담당부장 · 세콤(주) 영업개발부 부장 | 없음 |
| 사토 사다히로 | 세콤(주) 그룹국제사업본부 본부장 | · 미츠비시도쿄UFJ은행 CIB부 부장 (아시아투자은행부) | 없음 |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타카쿠라 켄슈 | 1968.11.19 | 직원 | 이사회 |
| 총 (1)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타카쿠라 켄슈 | 세콤(주) 그룹국제사업본부 기술부장 | · 세콤(주) 개발센터 과장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8명(2명) | 8명(2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억원 | 100억원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제5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2명 | 2명 |

| | | |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5억원 | 5억원 |
|---------------|-----|-----|